



KERI Insight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정과 정책적 함의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hwang@keri.org)

본 연구는 OECD 및 아시아 국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 수준을 추정하였다. 법인세 부담 수준으로는 국가별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고려하였으며 OECD 회원국 및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경제·정치·사회변수들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하였다. 최근 복지와 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석결과 법인세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나 고령화가 심화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세계적으로 명목 최고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법인세 부담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은 현재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5%~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현재 지방세 포함 명목 최고법인세율 24.2%와 비교하여 1.3%p~1.7%p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도 2.8%~3.4%로 나타나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 3.7%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법인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0.3%p~0.9%p 낮은 수준이며, 2012년 GDP를 기준(1,377조)으로 최소 약 4조 원가량의 법인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법인세 부담 수준을 정상 수준까지는 완화하여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법정 최고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폐지 등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폐지될 필요가 있다.

1. 서론¹⁾

□ 복지 재원조달이 차질을 빚으면서 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의 세율이나 공제항목의 조정을 통한 법인세 부담의 인상 가능성 제기

-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고용·생산 등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 법인세 부담 인상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이를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²⁾

-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비과세·감면 지속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2008년 이후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되었지만 최저한세율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인상됐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 등 비과세·감면 제도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추세
-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은 2014년 귀속소득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전면 폐지되며, 2015년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이 시행되어 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에서는 OECD 및 아시아 국가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인세 부담수준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에서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수준을 추정하고자 함.

- 국가별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을 경제사회변수들로 실증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수준을 추정
-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부담 인상이 타당한지를 검토

2.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

1) 법정 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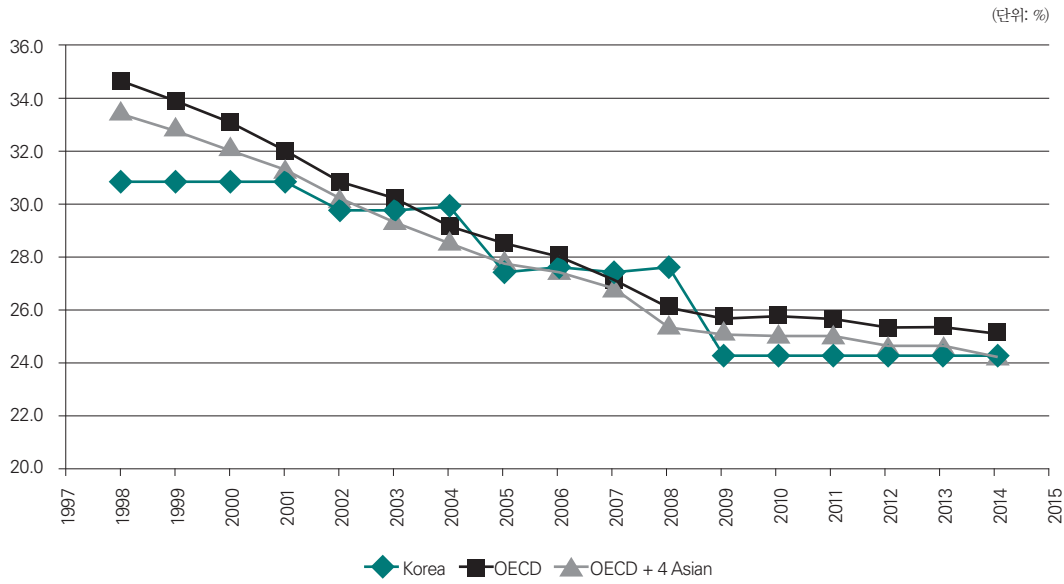
□ 1998~2014년 기간 법정(=명목) 최고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

- <그림 1>과 같이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OECD 34개국 평균으로 1998년 34.6%에서 2014년 현재 2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이와 유사하게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 등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 평균으로는 1998년 33.6%에서 2014년 현재 24.3%까지 하락
-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30.8%에서 2014년 현재 24.2%까지 단계적으로 하락

1) 본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가공에 많은 도움을 준 김지원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 대한상공회의소(2015)

〈그림 1〉 법정 최고 법인세율 추이(1998~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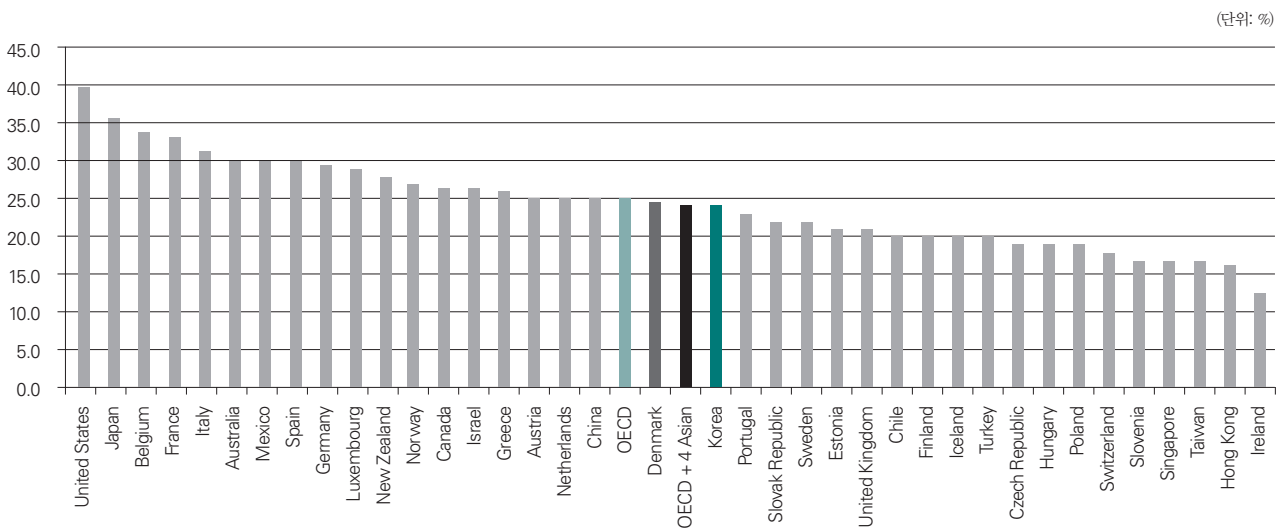


주 1: "OECD"은 34개국, "OECD+4 Asian"은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을 포함한 38개국
 2: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

- 2014년 현재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중위권에 해당
- 〈그림 2〉에서 법정 최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함.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 등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함.

〈그림 2〉 법정 최고 법인세율 국제비교(2014년)



주 1: "OECD"은 34개국, "OECD+4 Asian"은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을 포함한 38개국
 2: 법정 최고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

2) 법인세 부담률

□ 1998~2012년 기간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는 등락만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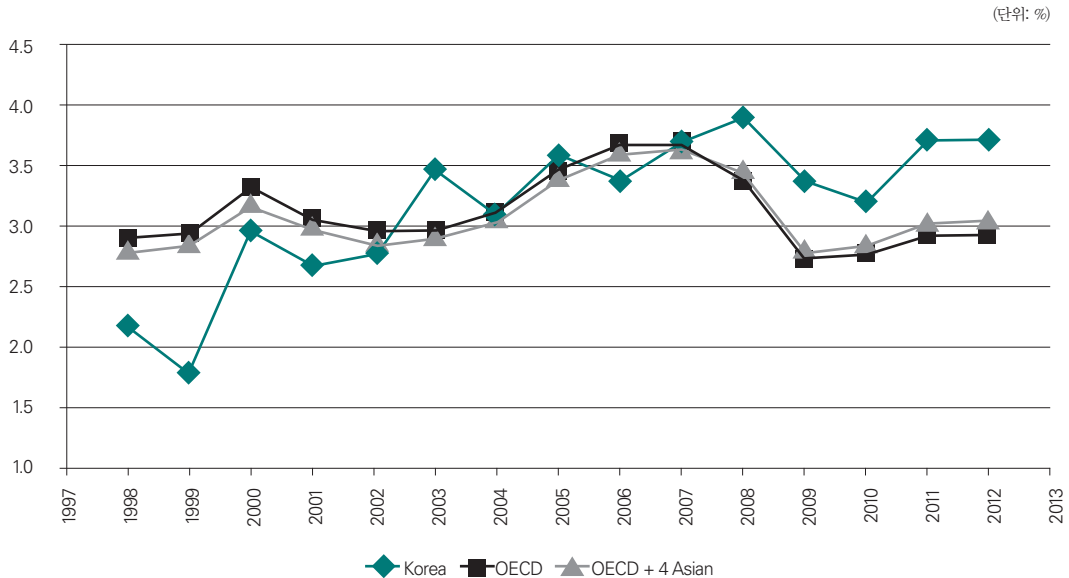
- <그림 3>과 같이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은 OECD 34개국 평균으로 1998년 2.9%에서 등락하며 2012년 현재 2.9%로 같은 수준에 이름.
- 이와 유사하게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 등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 평균으로는 1998년 2.8%에서 등락하며 2012년 현재 3.1%로 소폭 상승

-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8년 2.2%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3.7%로 대폭 상승

□ 2012년 현재 법인세 부담률을 국제적으로 상·중·하로 구분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상위권에 해당

- <그림 4>에서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은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 6위를 차지함.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 등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한 38개국 중 8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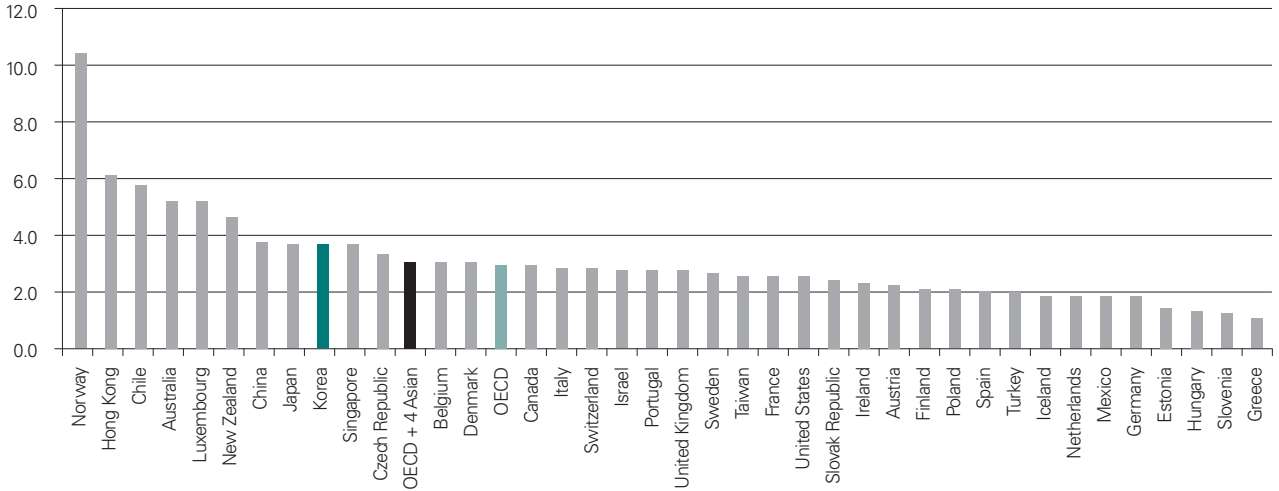
<그림 3> 법인세 부담률 추이(1998~2012년)



주 1: "OECD"는 34개국, "OECD+4 Asian"은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을 포함한 38개국
 주 2: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그림 4〉 법인세 부담률 국제비교(2012년)

(단위: %)



주 1: "OECD"는 34개국, "OECD+4 Asian"은 OECD 34개국에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을 포함한 38개국
 주 2: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법인세수는 지방세를 포함

3.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 추정

1) 이론적 고찰

□ 본 절에서는 국가별 법인세 부담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률을 추정하고자 함.

- 국가별 실제 법인세 부담수준은 명목 법인세율, 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수준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GDP 대비 전체 법인세수 비율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평균세율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수준을 측정(Slemrod(2004))

-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은 나라마다 처한 경제사회적 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률의 세계적인 추이와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적인 여건에 적합한 법인세 부담률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

- 추정된 정상 법인세 부담 수준을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최고법인세율 및 법인세 부담률과 비교하여 향후 법인세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법인세 부담의 대표적인 지표인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는 기존에도 여러 연구가 있었음.

-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경제적 인 요인과 정치사회적인 요인들이 거론됨.
 - 경제적인 요인들에는 시장규모, 개방도,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정치사회적인 요인들로는 고령화 수준, 부패수준,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성향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은 주변국 혹은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국가의 고유한 경제사회적인 요인들이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주변국의 법인세율의 수준이 한 국가의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측면이 적지 않으며 결과적으로는 법인세율의 세계적인 추세도 한 나라의 법인세율 수준 결정에 매우 중요

□ 법인세율과 관련한 경제적인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통적으로는 국가규모와 법인세율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
 - 국가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자본유출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규모가 작을수록 법인세를 인하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 주요 논리임.
 - * 하지만 최근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국가규모와 법인세율과의 상관관계가 혼재된 것으로 나타남.
 - Hines & Summers(2009)는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어느 나라라도 소국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Plümper et al.(2009)는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수로 측정한 국가규모와 법인세율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vereux et

al.(2008)은 어떤 유의적인 관계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함.

- 전통적인 조세경쟁 이론에 따르면 개방도가 높을수록, 즉 세계경제에 대한 통합도가 높을수록 법인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됨.
 - 개방도나 통합도가 높아지면 법인세율의 변화에 기업들이 보다 민감해지고 따라서 법인세율을 낮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통합이 중심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적으로는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오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실증분석에서는 혼재된 결과를 가져옴.
 - Lorenz(2007), Hansson & Olofsdotter(2012)는 경제통합과 법인세율이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분석한 반면 Slemrod(2004), Winner(2005) 등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
 - 이러한 이론의 배경에는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의 격차가 너무 크면 경제주체들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가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 개인소득세율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임(Slemrod(2004)).
 - 하지만 조세구조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출, 국가채무 규모, 실업률 등이 법인세 부담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언급
- 법인세율과 관련한 정치사회적인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령화 수준은 한 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Plümper et al.(2009))
- 한 나라의 부패정도(corruption)도 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음.
 - 부패정도는 정경유착, 세수입과 연관된 공직자들의 부패 등과 관련이 있어 부패수준이 법인세율 및 법인세 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Hwang(2002), Tanzi & Davoodi(2000))
- 이외에도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성향 등도 법인세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제도적인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관료제 비용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에 조세경쟁의 시각에서 낮은 법인세율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음.
 - 집권당의 성향도 법인세 부담수준과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좌파 성향의 정부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설정할 가능성이 많음(Hansson et al.(2012))

2) 실증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와 아시아 주요국 등을 포함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정상수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
-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34개국과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하여 총 38개국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

- 아시아 4개국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
- 분석 대상국의 범주에 따라 정상수준 추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국을 OECD 회원국과 OECD 회원국 및 아시아 4개국을 포함한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IMF 경제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체제 변화 등을 감안,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나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제약에 따라 2000~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함.
- 종속변수로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는 경제·정치·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법인세 부담수준 지표로는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GDP 대비 법인세 수 비중을 의미하는 법인세 부담률을 사용
 -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가장 관측이 쉽고 국가별 법인세 부담 수준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부담수준의 일차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 하지만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나 최저한세율 등 명목 법인세율 외에도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GDP 대비 법인세 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법인세 부담률도 법인세 부담수준의 지표로 사용
- 본 연구의 실증분석 독립변수로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사회적 요인들을 포함, 기존의 문헌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고려³⁾

3) 이하에서 설명하는 변수들은 Hansson et al.(201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혀둠.

- 국가별 규모를 고려하기 위하여 국가별 GDP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
-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GDP 대비 전체 무역액 (수출액+수입액)의 비율을 사용
 - * 개방도가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양 혹은 음의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양의 효과를 미치는 이유는 무역의 증가가 경제의 응집효과를 가져와서 세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개인소득세율과 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여 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각각의 모형에 대응하여 사용하였음.
 - * 최근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관계 및 추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포함
- 예산제약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출부문 변수도 함께 고려하여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고령화 정도, 재정지출 규모, 국가채무 정도를 포함시켰음.
 - * 고령화 수준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사용하였으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추가 세수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을 사용하였으며 이 비중이 클수록 정부의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압력이 증가
 - *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사용하였는데 국가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국내에서 세입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하지만 반대로 국가채무의 증가는 경기상황의 악화를 대변하는 변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인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실업률과 장기 이자율도 통제변수로 사용

* 실업률은 경기상황의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업률의 상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율 혹은 세부담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기 이자율로는 10년 만기 국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국채 이자율의 상승도 대외 여건 악화 혹은 경기상황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및 세부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한 나라의 세율 및 세부담은 국제화 및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세율 및 세부담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담의 상호의존성을 모형에 고려하였음.

* 예컨대 다른 나라들이 세율 및 세부담을 인하할 경우 자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세율 및 세부담을 인하할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들의 세율 및 세부담이 자국의 세율 및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 세부담의 상호의존성은 가까운 나라의 세율 및 세부담이 먼 나라의 세율 및 세부담 수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에 사용된 모든 나라들 간 세부담 상호의존성의 가중평균을 산출하여 모형에 적용하였음.

→ 세부담 상호의존성

$$\overline{T}_{it} = \sum_{j \neq i} w_{ij} T_{jt}, \quad \text{단} \quad \sum_{j \neq i} w_{ij} = 1$$

$$w_{ij} = \frac{\frac{\ln(pop_j)}{d_{ij}^2}}{\sum_{j \neq i} \frac{\ln(pop_j)}{d_{ij}^2}}$$

(T 는 시간 t 기에서 국가 j 의 법인세 부담수준, pop 은 해당 국가의 총인구수, d_i 는 국가 i 와 국가 j 의 수도 사이의 지리적 거리를 의미)

- 집권당의 성향도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음.
- * 집권당을 우파, 좌파 혹은 중도파로 구분하여 변수에 포함하였는데 좌파 성향의 집권당은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우파 성향의 집권당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부패정도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반영하여 부패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음.
- * 부패지수는 정치권력과 기업집단 간의 정경유착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등과 관련이 있어 기업의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모델에 포함시킴.
- * Hwang(2002), Tanzi & Davoodi(2000) 등은 부패정도가 높을수록 세금의 부과나 징수에서 누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수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세금부담의 주체와 정치권의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목에 따라 세금부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 관료제 비용 등도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고려
- * Merrifield(2000)의 연구에서는 관료제 대리 변수를 사용하여 관료제가 세수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 관료제 비용이 높을수록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 부담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분석방법으로는 LSDV(Lease squares 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

- 패널 데이터에는 주로 고정효과(fixed effect)를 고려한 패널분석방법을 사용하지만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각 국가별 고정효과와 계수값을 추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실제로 상수항이나 시간불변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의 값을 제외하고는 고정효과 패널분석 결과와 LSDV로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는 동일
- LSDV로 추정할 경우 고정효과 모형과 동일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국가별 고유특성 더미변수에 대한 계수값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적정수준을 추정하기에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LSDV를 사용하여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
 - 국가별로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하여 추정
 - 최종 회귀방정식은 법인세 부담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와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고려
 - 법인세 부담률과 명목 최고법인세율로 종속변수를 달리하는 경우 독립변수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경우 비율이 아니라 세율 수치로 표기되기 때문에 시간 추이에 따른 변화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간변수를 추가하였음.
 - * 시간변수 이외에는 독립변수의 구성이 동일하며 다만 대응변수를 맞추기 위하여 법인세 부담률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변수들을 GDP 대비 부담률로,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경우에는 대응되는 변수들은 세율로 통일하여 분석을 수행

$$\begin{aligned} \text{명목 최고법인세율}_{it} = & \\ & \alpha + \beta_k * X_{it-1} + \gamma * \bar{T}_{it-1} + \delta_k * Z_{it} + \theta_i * i.country \\ & + \lambda * time_t + \epsilon_{it} \dots\dots\dots(1) \end{aligned}$$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국가별 명목법정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X_{it-1} 은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기 전의 변수를 사용한 변수 그룹으로서 ln(GDP), 고령화 지수, 개방도(GDP 대비 총무역액), 국가채무 규모(GDP 대비 국가채무), 정부규모(GDP 대비 정부지출액), 실업률, 장기 이자율(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명목최고 개인소득세율 등을 포함, \bar{T}_{it-1} 는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상호의존성 가중평균, Z_{it} 는 정치사회변수로서 당기의 변수인 부패지수,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정치성향 등을 포함, $i.country$ 는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time$ 은 시간추세 변수를 나타냄)

$$\begin{aligned} \text{법인세 부담률}_{it} = & \alpha + \beta_k * X_{it-1} + \gamma * \bar{T}_{it-1} \\ & + \delta_k * Z_{it} + \theta_i * i.country + \epsilon_{it} \dots\dots(2) \end{aligned}$$

(법인세 부담률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X_{it-1} 은 내생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기 전의 변수를 사용한 변수 그룹으로서 ln(GDP), 고령화 지수, 개방도(GDP 대비 총무역액), 국가채무 규모(GDP 대비 국가채무), 정부규모(GDP 대비 정부지출액), 실업률, 장기 이자율(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소득세 부담률(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등을 포함, \bar{T}_{it-1} 는 법인세 부담률의 상호의존성 가중평균, Z_{it} 는 정치사회변수로서 당기변수인 부패지수, 관료제 비용, 집권당의 정치성향 등을 포함, $i.country$ 는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나타냄)

〈표 1〉 분석대상 국가 리스트

OECD(34개국)	아시아 국가(4개국)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hina, Hong Kong, Singapore, Taiwan

〈표 2〉 변수 소개 및 자료 출처

변수명	변수 소개 및 자료 출처
Cortaxrate	명목 최고법인세율(지방세 포함): KPMG, Tax Foundation, OECD stat, European Commissions: Structures of the taxation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2006), Slovenia: Trading Economics.
Cortaxrev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OECD stat,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중국: IMF, 대만: Tax Revenues Index, Ministry of Finance, Taiwan,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GDP	국내총생산: IMF (WEO): PPP-adjusted GDP (Billions of international dollar).
Open	개방도(GDP 대비 무역액(수출+수입)): WB(세계은행, World Bank), 대만: IMF(DOTS)의 대만 수출입량 자료 기준.
Indtaxrate	명목최고 개인소득세율(지방세 포함): OECD stat, 중국: 중국개인소득세법, 대만: Ministry of Finance, 싱가포르: Budget Tool Kit 2014, Ernest & Young,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Indtaxrev	개인소득세 부담률(GDP 대비 개인소득세수 비중): OECD stat, 대만: Ministry of Finance, Taiwan, 중국: China Statistical Year Book 2014,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홍콩: Annual Report 2001~2012, Inland Revenue Department * 일부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수와 IMF(WEO)의 GDP자료를 이용해 계산함.
Debt	국가채무(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IMF (WEO):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Eld	고령화 수준(GDP 대비 고령인구 비중): WB(World Bank), 대만: National Development Council.
Unemp	실업률: IMF (WEO).
Govsize	정부규모(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IMF (WEO):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Ltir	장기 이자율 (10년 만기 국제 이자율): OECD stat,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IMF (IFS), 싱가포르: CEIC Government Securities: Yield: Month End: 10 Years (매년 6월 이자율 기준), 홍콩: Hong Kong Monetary Authority(매년 6월 이자율 기준), 대만: 대만중앙은행(매년 6월 이자율 기준), 중국: investing.com (매년 6월 1일 이자율 기준).
Strint_all_rate	명목최고법인세율 기준 전략적 상호의존도 가중평균: 38개국 대상, Distance: CEPII (geodist), Population: WB.
Strint_oecd_rate	명목최고법인세율 기준 전략적 상호의존도 가중평균: OECD 대상 Distance: CEPII (geodist) Population: WB
Strint_all_rev	법인세 부담률 기준 전략적 상호의존도 가중평균: 36개국 대상, 멕시코와 싱가포르는 일부 연도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멕시코와 싱가포르는 제외됨, Distance: CEPII (geodist), Population: WB.
Strint_oecd_rev	법인세 부담률 기준 전략적 상호의존도 가중평균: 33개국 대상, 위의 36개 국가중 OECD 비회원국을 제외함(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Distance: CEPII (geodist), Population: WB.
Corr	부패수준: 값의 범위: -2.5~2.5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음), WB: 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4.
Bureauc	관료제 비용: 값의 범위: 0~10(수치가 높을수록 관료비용이 큼),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Data 2014.
Exe	집권당의 정치성향 (1: 우파(Right), 2: 중도(Center), 3: 좌파(Left)): WB: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DPI) 2012, 몇몇 비어있는 자료는 European Election Database (http://www.nsd.uib.no/european_election_database) 참조.

〈표 3〉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고령화 지수(Eld)	494	13.93	3.769	4.92	24.40
개방도(Open)	494	104.80	82.63	20.26	450.00
국가채무(Debt)	491	55.05	36.95	3.05	237.30
정부지출(Expenditure)	491	39.44	11.22	11.95	62.78
실업률(Unemp)	494	7.00	3.74	1.01	24.80
명목 최고법인세율(Cortaxrate)	494	27.58	7.19	12.50	51.60
법인세 부담률(Cortaxrev)	489	3.16	1.644	0.60	12.80
장기 이자율(Ltir)	471	4.78	2.356	0.65	22.50
명목최고 개인세율(Indtaxrate)	494	43.38	9.149	15.00	60.50
개인소득세 부담률(Indtaxrev)	485	7.67	4.62	0.67	25.50
상호의존 가중치 세율(Strint_all_rate)	494	28.21	4.051	19.32	42.29
상호의존 가중치 세부담(Strint_all_rev)	468	3.03	0.631	0.99	5.50
부패지수(Corr)	494	1.29	0.845	-0.71	2.59
관료제 비용(Bureauc)	492	4.49	2.273	0.37	9.94
국가규모(Lngdp)	494	6.04	1.496	2.03	9.69
집권당 성향(Exe)	494	1.91	0.920	1.00	3.00

3) 실증분석 결과

□ 분석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본 통계치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3>과 같음⁴⁾.

□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OECD 국가와 OECD 및 주요 아시아 국가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회귀방정식 (1)을 사용하여 추정
- 2000년 이후 국제적으로는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인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재원조달을 법인세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결과는 전체 국가(OECD와 아시아 4개국)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두에서 유의 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규모(GDP)가 증가할수록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는 않음. Plümpner et al.(2009)의 경우 국가규모 지표로 총 인구를 사용하여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규모와 법인세율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ansson et al.(2012)에서도 GDP를 사용한 국가규모와 법인세율 사이의 회귀분석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이 도출됨.
 - 이는 세계화·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전 세계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이 쉽지 않으며,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GDP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법인세율은 하락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4) 기초통계량은 2000~2012년의 데이터 가운데 해당 변수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연도의 기초통계량을 산출한 것임. 실증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동시에 사용가능한 관측치에 대해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통계량의 적용 연도와 실증분석에 사용된 연도가 다를 수 있음.

로 사료됨.

- 주변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 역시 한 국가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결정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세경쟁 이론에서 한 국가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주변국의 명목 최고법인세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논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남.
- 관료제 비용과 집권당의 성향도 명목 최고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명목 최고법인세율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OECD + 아시아 주요국	OECD
변수	cortaxrate	cortaxrate
L.lngdp	-6.495** (1.633)	-7.703** (2.510)
L.eld	-1.030** (0.236)	-1.108** (0.231)
L.open	0.0340** (0.00709)	0.0269* (0.0119)
L.debt	0.0335* (0.0141)	0.0367* (0.0147)
L.govsize	0.0909* (0.0444)	0.0831 (0.0511)
L.unemp	-0.0733 (0.0744)	-0.0772 (0.0812)
L.itir	-0.223 (0.119)	-0.207 (0.125)
L.lndtaxrate	-0.0181 (0.0459)	-0.0294 (0.0484)
L.strint_all_rate	0.372** (0.110)	
L.strint_oecd_rate		0.387** (0.120)
Corr	0.840 (0.887)	1.237 (0.924)
Bureauc	-0.246** (0.0629)	-0.289** (0.0692)
Exe	0.437** (0.155)	0.449** (0.153)
Time	-0.146 (0.142)	-0.0882 (0.161)
Constant	363.6 (277.8)	256.9 (311.6)
Observations	432	388
R-squared	0.929	0.927

주 1: ** p < 0.01, * p < 0.05

2: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별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하였음.

- 관료제 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료제 비용이 높으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
- 집권당의 성향도 명목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만 5% 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서도 5%에 가까운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남.
 - * 우파 성향의 집권당보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에서 법인세 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지출 규모와 개인소득세율이 명목 최고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음.
 - OECD 및 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정부지출 규모의 증가는 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개인소득세율의 경우 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나 개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음.

□ 법인세 부담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회귀분석은 OECD 국가와 OECD 및 주요 아시아 국가로 나누어 추정하였으며 회귀방정식 (2)를 사용하여 추정
-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화 수준이 높을수록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우에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률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복지비용 재원조달을 법인세로 인상하려는 움직임과는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지출 규모가 증가할수록 법인세 부담률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결과임.
 -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의 효과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법인세 부담률의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는 법인세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OECD 및 아시아 주요국과

OECD 국가 모두의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

- 인구 고령화가 법인세 부담률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국제적으로는 정부지출이 증가하여도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추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출이 증가하여도 가능하면 법인세 부담의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변국의 법인세 부담수준도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 국가의 법인세 부담수준의 결정이 주변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조세경쟁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결과임.
- 장기 이자율은 법인세 부담수준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국채 이자율의 상승은 해당국 경기상황의 악화로 해석될 수 있는데 경기상황이 부진할 경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됨.
 - 전체 국가와 OECD 국가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나타남.
-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집권당의 성향 등도 법인세 부담수준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우파 성향의 집권당보다 좌파 성향의 집권당에서 법인세 부담률이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외에도 실업률이나 관료제 비용 등이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지만 모든 경우에서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지는 않아 그 효과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5〉 법인세 부담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변수	OECD + 아시아 주요국	OECD
L.lngdp	-0.342 (0.365)	-0.884* (0.352)
L.eld	-0.143* (0.0658)	-0.129* (0.0641)
L.open	0.00493 (0.00383)	-0.00528 (0.00365)
L.debt	0.00836* (0.00402)	0.0127** (0.00398)
L.govsize	-0.0376** (0.0137)	-0.0539** (0.0150)
L.unemp	-0.0303 (0.0177)	-0.0360* (0.0182)
L.itir	-0.135** (0.0269)	-0.148** (0.0275)
L.lndtaxrav	-0.0363 (0.0500)	-0.0368 (0.0480)
L.strint_all_rav	0.312** (0.0924)	
L.strint_oecd_rav		0.221* (0.100)
Corr	-0.0580 (0.192)	-0.0580 (0.187)
Bureauc	0.00437 (0.0209)	-0.0462* (0.0215)
Exe	0.105** (0.0358)	0.104** (0.0352)
Constant	10.61** (2.531)	15.55** (2.570)
Observations	432	399
R-squared	0.896	0.906

주 1: ** p < 0.01, * p < 0.05

2: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국가별 더미변수의 추정치는 생략하였음.

- 앞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201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을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은 앞의 회귀분석 계수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변수 실제값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상적인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을 추정하는 것임.
- 법인세 정상수준의 최종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정상수준_{it} =

$$\hat{\alpha} + \hat{\beta}_k * X_{it-1} + \hat{\gamma} * \bar{T}_{it-1} + \hat{\delta}_k * Z_{it} + \hat{\theta}_i * i.country + \hat{\lambda} * time \dots\dots\dots(3)$$

→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_{it} =

$$\hat{\alpha} + \hat{\beta}_k * X_{it-1} + \hat{\gamma} * \bar{T}_{it-1} + \hat{\delta}_k * Z_{it} + \hat{\theta}_i * i.country \dots\dots\dots(4)$$

- 회귀분석 추정결과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5%~22.9%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현재 지방세 포함 명목 최고법인세율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현재보다 1.3%p~1.7%p 낮은 수준임.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도 2.8%~3.4%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법인세 부담률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법인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0.3%p~0.9%p 낮은 수준임.
 - 2012년 GDP를 기준(1,377조)으로 최소 약 4조 원가량(0.3%)의 법인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주요국들의 법인세 부담 정상수준을 살펴보면 노르웨이, 프랑스 등은 정상수준 대비 실제치(현재수준)가

〈표 6〉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 비교(2012년)

항목	실제치(A)	정상치(B)	(A)-(B)
명목 최고법인세율 (OECD+아시아 주요국 기준)	24.2%	22.5%	1.7%p
명목 최고법인세율 (OECD 기준)	24.2%	22.9%	1.3%p
법인세 부담률 (OECD+아시아 주요국 기준)	3.7%	3.4%	0.3%p
법인세 부담률 (OECD 기준)	3.7%	2.8%	0.9%p

높고 영국, 네덜란드 등은 정상수준 대비 실제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 기준이 명목 최고법인세율인지 혹은 법인세 부담률인지에 따라 정상수준 대비 실제치(현재수준)의 높고 낮음이 달라질 수 있음.
- 스웨덴,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 명목 최고법인세율에서는 정상수준 대비 실제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인세 부담률에서는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독일, 뉴질랜드의 경우 명목 최고법인세율에서는 정상수준 대비 실제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법인세 부담률에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OECD 기준 분석결과 주요국 법인세 부담수준 실제치와 정상치(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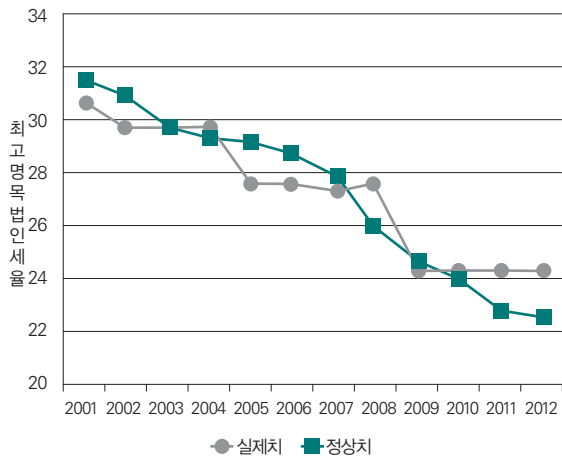
항목	명목 최고법인세율(%)			법인세 부담률(%)		
	실제치(A)	정상치(B)	((A)/(B)) x100	실제치(A)	정상치(B)	((A)/(B)) x100
스웨덴	26.3	23.5	111.8	2.6	2.9	89.7
미국	40.0	36.3	110.2	2.5	2.5	98.2
호주	30.0	27.4	109.5	5.2	5.5	95.4
노르웨이	28.0	26.0	107.9	10.5	10.2	103.0
한국	24.2	22.9	105.7	3.7	2.8	131.5
프랑스	33.3	31.7	105.0	2.5	2.5	100.3
일본	38.0	37.4	101.6	3.7	3.8	98.5
덴마크	25.0	25.3	98.9	3.0	3.0	100.1
이탈리아	31.4	32.0	98.2	2.8	2.6	107.6
뉴질랜드	28.0	28.6	98.1	4.7	4.2	112.1
영국	26.0	26.9	96.8	2.7	2.9	92.9
네덜란드	25.0	25.9	96.7	1.9	2.4	78.6
독일	29.5	30.7	95.9	1.8	1.4	126.1

- 최근에 복지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나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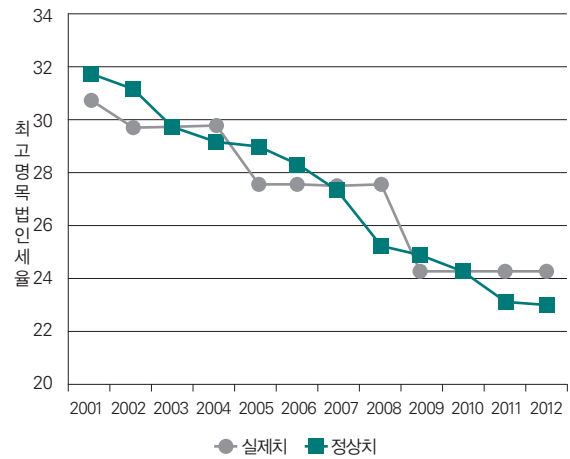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법인세율 및 법인세 부담률은 모두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OECD와 OECD 및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고령화가 진행되거나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법인세 부담 인상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법인세 부담의 증대는 지양하고 다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조경엽·유진성(2015)에서도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에 따른 GDP 손실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에 비해 약 1.8배~2.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법인세를 통한 재원조달은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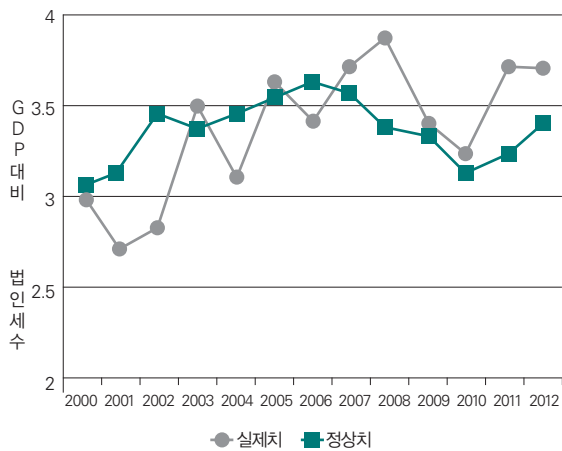
〈그림 5〉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의 정상수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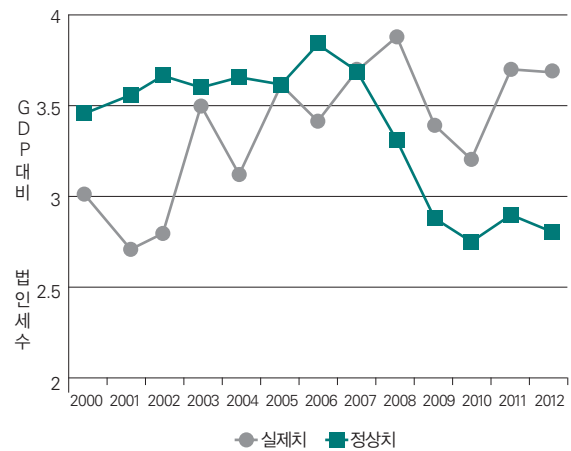
<명목 최고법인세율(%) 정상수준 추이 -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명목 최고법인세율(%) 정상수준 추이 - OECD>



<법인세 부담률(%) 정상수준 추이 - OECD 및 아시아 주요국>



<법인세 부담률(%) 정상수준 추이 - OECD>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 최근 복지와 증세 논쟁이 불거지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나 고령화가 심화되더라도 법인세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OECD와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명목 최고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이 증가하여도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악영향을 고려하여 법인세 부담은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추세가 더 강한 것으로 사료됨.

*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모든 경우에 1% 유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효과).

* 명목 최고법인세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아 양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

- 주변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 역시 한 국가의 명목 최고법인세율 및 법인세 부담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명목 최고법인세율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도 현재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추정됨.

- 회귀분석 추정결과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명목 최고법인세율의 정상수준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2.5%~22.9%인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현재 지방세 포함 명목 최고법인세율이 24.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현재보다 1.3%p~1.7%p 낮은 수준임.

-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의 정상수준도 2.8%~3.4%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법인세 부담률이 3.7%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정상 법인세 부담률은 현재보다 0.3%p~0.9%p 낮은 수준임.

• 2012년 GDP를 기준(1,377조)으로 최소 약 4조 원가량의 법인세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법인세율 및 법인세 부담률은 정상적인 법인세 부담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적 함의

□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정(=명목) 최고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우선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하는 정상수준까지 낮추어 여타 국가들에 대응하여 경쟁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고 내수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될 필요가 있음.

-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투자에 활용하며 임금증가나 배당에 사용하여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추가과세하는 법인세 법상 제도

• <표 8>과 같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이 미달한 금액(기준미달액)에 대해 세율 10%로 추가과세

-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배경과는 반대로 현재까지 유보금 증가는 생산에 필요한 유·무형자산 증가에 사용되어져 왔음.

• 조경엽 외(2014.12)에 따르면 기업수준(firm level)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1985~2012년 기간과 2000~2012년 기간 우리나라의 비금융업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의 유보금과 현금성자산, 유형자산(토지제외), 무형자산은 (+)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음.

• 황인태·강선민(2011.1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2010년 기간 우리나라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유보금 증가는 현금성자산 증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반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가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추가적 투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기업의 투자의욕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임금증가 유인도 부족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기업들의 지배주주가 경영자이므로 기업의 배당 유인도 적음.

<표 8> 2014년 세법개정에 의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세법 신설)

2014년(현행)	2015~2017년(개정안)
<신설>	<p>□ 기업소득 환류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이유>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 또는 ㉡ 중 선택(* 최초 선택 시 3년 계속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소득 × 기준율α(60~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당기소득 × 기준율β(20~4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법에 기준율 상한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율은 시행령에 규정 -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 - 당해연도 기준초과액으로 다음연도의 기준미달액에서 공제 가능 * 과세방식 무신고시 최초연도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적용하고, 미활용액은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 ○ (과세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또는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 - (투자액)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 (임금증가)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 (기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예: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까지 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2014.08.06)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2013.08.08.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08.06.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15.
- 송원근·유진성·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정책연구 2013-09, 한국경제연구원, 2013.10.
- 조경엽,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KERI 브리프, 2015.
-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정책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5.
- 조경엽·유진성·윤상호·황상현·허원제·김영신, “2014년도 세법개정안 평가와 시사점”, 정책연구 2014-13, 한국경제연구원, 2014.12.
- 황인태·강선민, 기업의 사내유보와 현금성 자산, 어떻게 볼 것인가, 대외세미나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11.12.
- Hansson, Åsa, & K. Olofsdotter, “Integration and the structure of Public Spending,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7), 2008
- Hansson, Åsa, Susan Porter & Susan Perry Williams, “The Effec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on Corporate Tax Rates,” IFN Working Paper No. 942, 2012
- Hines, J. & L. Summers, “How globalization affects tax desig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4664, Cambridge, Massachusetts, 2009
- Hwang, Jinyoung, “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overnment revenue,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27, No 2, 2002
- Lorenz, S., “Determinants of bilateral effective tax rates: Effective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Fiscal Studies, 28, 2007.
- Merrifield, John, “State government expenditure determinants and tax revenue determinants revisited,” Public Choice, Vol 102, 25-50, 2000.
- Plümper, T., Troeger, V.E. & H. Winner, “Why is there no race to the bottom in capital tax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3, 761-786, 2009.
- Slemrod, J., “Are corporate tax rates, or countries, converg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169-1186, 2004.
- Tanzi, Vito & Hamid R. Davoodi, Corruption, Growth, and Public Finances, IMF Working Paper, WP/00/182, 2000.
- Winner, H., “Has tax competition emerged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panel data,” International Tax & Public Finance, 12, 667-687, 2005.
- Devereux, M., Lockwood, B., & M. Redoano, “Do countries compete over corporate tax r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210-1235, 2008.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5년 7월 9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